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심위 설치목적 상 공정성 삭제 및 방심위원장 보수 제한〉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04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심위 설치목적에서 공정성 삭제 (안 제18조제1항)	2
2. 방심위원장 보수 제한 (안 제18조제4항)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9.

다.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방심위 설치목적에서 공정성 삭제(안 제18조제1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제1항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설치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u>공공성</u> 및 <u>공정성</u> 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u>공공성</u> 을----- ----- ----- ----- -----.

나. 검토 의견

- 법 제18조는제1항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등을 위하여 방심위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3조는 제1항²⁾에서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1)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관련 조항은 제2장제1절(공정성)로 이 중 공정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제9조(공정성)에 대한 심의규정은 ①진실성, ②균형성, ③방송기술 오용금지, ④이해당사자 일방주장 금지, ⑤차별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관련 내용 >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또한 모호함에 따라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승

인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해 대부분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특히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축소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최소 규제의 원칙을 살리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 공정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으로 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방송법」에서 “공정성”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³⁾,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⁴⁾, 제32조(방송의 공정성과 공

3)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공성 심의)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제1항⁶⁾,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제2항⁷⁾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 상 다른 조문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33조제1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

-
-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5)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6)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방송법」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는 「방송법」 개정안과⁸⁾ 보도·논평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에서
는 공정성·공공성을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⁹⁾이 우리 위원
회로 회부된 상황으로, 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통위는 법체계상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론 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심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방송법」은 보도의 공정성을 기본원칙
으로 하여(제6조)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사항(제10조제1항)
에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원칙(제69조제1
항),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제78조의2제2항)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내적 다원주의를 채택한 현
행법제 하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며, 현행 「방송법」의 다수 조항에서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0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제32조, 제44조제1항, 제
69조제1항, 제78조의2제2항 등), ‘공정성’의 개념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2015두49474)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¹⁰⁾되어 있음

8) 의안번호 2205117(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03(정동영의원 대표발의)

9) 의안번호 2207398(노종면의원 대표발의)

10)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함.

로, 공정성 심의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제18저에서 ‘공정성’ 문구만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공정성 심의를 폐기하는 방식 역시 전제 법체계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송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 방송사업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EBS는 수용, TV조선은 일부 수용입장이고, 연합뉴스는 신중 검토 입장임.

<방송사업자 의견>

- **EBS:**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과 같은 개념은 학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따르는 현실로,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 ‘방송’을 특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축소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최소 규제의 원칙을 살려 사회 규범과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수용 입장
- **TV조선:**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보도의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의 방송평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공정성’ 등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재승인 부관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논란을 줄이고 사업자 규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재승인 부관조건도 함께 삭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수용 입장임.
- **연합뉴스:** 재승인, 방송평가 등 공정성 관련 심사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2. 방심위원장 보수 제한(안 제18조제4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18조제4항¹¹⁾에 단서를 신설하여 방심위원장의 보수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보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③ (생략)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⑤ ~ ⑦ (생략)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③ (생략) ④ ----- ----- ----- ----- ----- 다만, 심의위원장의 보수는 위원장의 보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국회 과방위는 동 사업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 시 방심위의 ‘정치심의’ 논란 등을 지적하며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주요 임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방심위

11)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는 2025년 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전년 대비 10% 삭감한 바 있음¹²⁾.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과방위 부대의견 중>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의 내역인 인건비에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2억 4,2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한다.

<방심위 상임위원 연봉(수당 등 포함)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위원장	190,614	195,380	175,842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80,748	185,267	185,267

<정무직 공무원 연봉(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별표32)>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49,692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45,378

주: 2025년 기준

- 방심위는 2008년 2월 29일 「방통위설치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독립기구로 출범했으나, 기관의 경상경비나 인건비 등의 예산 전액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로 지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¹³⁾은 대외적으로 그 직무를

12) 상임위원의 경우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2인이 공식인 상태로, 추후 공식이 해소되면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삭감을 보류하였음.

13) 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가13, 서울행정법원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판결 등

처리하는 방식이나 설립근거, 위원임명방식, 재정, 권한 등의 사항을 기반으로 방심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판단하기도 함.

- 개정안은 방심위가 실질적인 기능이나 권한의 측면에서 합의제 행정청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정을 전부 국고보조에 의존한다는 점이나 현재 방심위원장의 연봉이 과도하다는 인식 등을 바탕으로 방심위원장의 보수한도 규정을 통해 과도한 보수 책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방통위와 방심위는 방심위의 민간기구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통위는 민간인의 보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임.
 - 방심위는 독립민간기구인 방심위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 시 방심위원장 보수의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6조가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단서는 “심의위원장의 보수는 위원장의 보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6
